

의과대학 기초교원 업적평가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거하여 의과대학 기초교원의 업적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의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대상) ① 이 규정은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6. 6. 30.)

② 전임교원이라 함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말한다.

③ <삭 제> (삭제 2016. 6. 30.)

제3조(평가의 예외인정) 평가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 6. 30.)

1. 평가 기간 중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2. 평가 기간 중 6개월 이상 해외 연수, 공무에 의한 출장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3. 처장급 이상의 보직을 6개월 이상 수행한 경우

제4조(구분 및 정의) 기초교원의 업적은 다음 각 호의 교육, 연구, 봉사, 산학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의과대학 기초교원 업적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개정 2016. 6. 30.)

1. 교육영역이란 강의 및 학생지도에 관한 노력 및 실적 등을 말한다.
2. 연구영역이란 저술활동, 연구논문 및 보고서, 학술대회발표 및 강연, 연구비 수탁 활동 등을 말한다.
3. 봉사영역이란 교내 봉사활동, 교외 봉사활동 등을 말한다.
4. 산학영역이란 취업·창업동아리지도, 산업체 교류, 특허, 산업체 연구비 수주 활동 등을 말한다.

제5조(평가 기간 및 기준) ① 의과대학 교원업적평가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6. 6. 30.)

② 평가 기준은 <별표1> 의과대학 기초교원 업적평가기준과 같다(신설 2016. 6. 30.)

제6조(의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 ① 의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위원은 의과대학교원 중 7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6. 6. 30.)

② 위원장은 학장이 하며, 위원은 학장이 임명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 2016. 6. 30.)

제7조(의과대학 교원업적 평가위원회의) ① 의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신설 2016. 6. 3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6. 6. 30.)

제8조(의과대학 교원업적 평가위원회 심의사항) ① 의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6. 6. 30.)

1. 평가의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
2. 의과대학 교원업적평가 서식 결정에 관한 사항
3. 교원업적 기재사항의 확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업적 우수교원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원 업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평가 절차) ① 교원은 평가 대상 기간의 업적에 대한 소정 양식의 기초교원업적평가 보고서 및 증빙 서류를 의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0.)

② 의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제출된 교원업적평가 자료에 대한평가를 시행한 후 통보한다.(개정 2016. 6. 30.)

③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해당교원은 결과를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의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 6. 30.)

④ 의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는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재심사 한 후, 재심사 결과를 해당교원에게 통보한다.(개정 2016. 6. 30.)

⑤ 업적평가결과는 당해 교원 및 관계자 이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6. 6. 30.)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8월 24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로 시행한다.

<별표1>

의과대학 기초교원 업적평가기준

기초교원 영역별 배점		
교육 30 ~ 50% 평가 () + 기타 ()	연구 30 ~ 50% () 점	봉사, 산학 20% () 점

- ✓ 교육영역과 연구영역의 획득점수가 8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 교육영역의 학생평가·AL교과목평가·교수개발·학생상담을 제외한 점수와 연구영역의 점수 합은 5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 기타의 업적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1. 교육영역(30점 ~ 50점)

구분	평 가지 표	배점	인정 및 배점기준	점수	
교육	학생평가 · AL교과목 평가	수업평가	8	강의평가점수 X 배점	
		AL수업평가		AL강의평가 X 배점	
		AL수업계획서평가	4	교육질관리위원회(교육평가위원회) 평가	
		AL수업참관평가	2	교육질관리위원회(교육평가위원회) 평가	
		교육과정평가	6	교육과정평가 X 배점	
	학생상담	학생상담	5	학생상담 1건당(0.5점)	
	교수개발	교육관련 워크숍	5	건당 (1점)	
		교육관련 세미나			
		의학교육 연수			
		의학교육관련 학회			
	교육개선 노력	강의공개	20	강의 공개여부 (2점)	최대 5점
		시험피드백		시험문항 피드백 자료 제출 (1점)	
		교육관련회의		교육관련 회의 자료제출 건당 (1점)	
				교육관련 회의 주관교수 회당 (2점)	
		교육자료개발		교육용시청각 자료개발 건당 (1점)	
				TBL, CBL, PBL 모듈개발 건당 (1점)	
				동영상 자료개발 건당 (3점)	
		보충학습지도		보충학습지도 건당 (1점)	
	강의록 배부	강의록배부 10시간당 (1점)			
	기타	동기유발학기	책임교수 5점, 참여교수 3점		
의료인문학		책임교수 10점, 참여교수 강의 2시간당 1점, 교과목조정교수 5점			
비전체험실습		책임교수 10점, 참여교수 5점			
입시참여		건당 1점(면접 출제·평가)			
학생지도		키움Able, 동아리, 학년지도교수 건당 3점			

- ✓ 수업평가 점수는 의학과 강의평가·AL강의평가를 100%반영한다.
- ✓ 교육과정평가는 의학과 교육과정에 한하며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 ✓ 시험문항 피드백 자료는 시험실시 1주일 이내에 의과대학행정실에 제출한다.
- ✓ 강의록, TBL 모듈, CBL 모듈, PBL 모듈, 동영상 자료는 강의시작 3일 전까지 캘린더시스템에 등록한다.
- ✓ 의학교육학교실 전임·전담교수는 교수개발 워크숍 주최 2점, 세미나 개최 1점을 인정하며 교수 개발 부분 배점한도를 10점으로 한다.
- ✓ 교육관련 회의 자료는 교육과정 시작 1주일 전 또는 교육과정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의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한다.
- ✓ 보충학습지도는 학기중 평가를 통해 성적이 저조한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지도, 재시험 실시 후 근거 서류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2. 연구영역(30점 ~ 50점)

구분	평가지표	배점	배점기준		인정여부 및 비율	점수	
연구	연구 업적	논문	상한 없음	Science, Nature, Cell	100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의 교신저자 또는 제 1저자 : 100% 인정 : 교신저자 또는 제 1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저자수로 나눈 점수 단, 교내 기초·임상교원의 공동연구는 100%인정 공동연구자 : 1/(n+1)	
				SCI, SSCI	30		
				SCIE, A&HCI	20		
				Index medicus	15		
				학진등재지	10		
				학진등재 후보지	5		
				국외일반학술지	5		
	저서	상한 없음	국외 학술전문저서	25	1/n (n이 15명 이상일 경우는 불인정) 국내외 전문학술서는 전공과 관련된 저서만 인정 ISBN 등록 도서만 인정		
			국내 학술전문저서	20			
			전문번역서	20			
			일반번역서	10			
	연구 활동	학술대회 발표	5	국제 학회 발표	2	학회에서 발표한 것에 한해 인정하며 포스터발표는 50%만 인정한다.	
				국내 학회 발표	1		
		대학원생 지도	5	박사논문지도	2	학위논문지도는 학위수여자 수를 말하며 학위를 받는 당해 연도에 적용	
				석사논문지도	1		
		연구비 수탁		500만원(자연계) 250만원(인문사회계)	1	연구책임자 2/(n+1), 공동연구자 1/(n+1) 산업체 연구비 제외[산학영역]	
		연구계획서 제출	5	건당	2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제출된 계획서에 한함.	
		워크숍 및 세미나 참석	5	워크숍 주최	3	워크숍주최는 직접 진행한 경우만 인정 워크숍참석은 인증서를 받은 것만 인정 명곡의과학연구소 세미나 만 인정	
				워크숍 참석	2		
				세미나 참석	1		
수상 공훈		국제 학술상		건당	5	최대 1회 인정	
	국내 학술상		건당	3			
	교내 학술상		건당	2			

3. 봉사, 산학영역(20점)

구분		평가지표		배점	배점기준	점수
봉사	교내 봉사	행정보직	학과장, 부처장, 부학장	10	행정보직은 상위 1개만 적용 (대학원장은 부처장급)	
			부장, 소장, 실장	5		
			기타행정보직	3		
		위원회 활동	대학본부 위원회	3	6개월이상 활동한 위원회에 한하여 1점을 배정 위원장은 위원점수의 2배를 배정한다.	
			의과대학 위원회			
			교육질관리위원회 (교육평가위원회)	5		
		입시관련 홍보활동	대학교 단위	5	건당 1점	
			학과단위			
		비정규 수업	타과 강의 지원	5	타과 강의 지원 : 10 시간 당 1점 원내 강연 및 교육 : 건당 1점	
			원내 강연 및 교육			
	대학정책 사업참여	책임자	5	실적 제출시 의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점부 부여.		
		참가자				
	재정기여 및 장학금 확보	장학금 및 발전기금 유치	5	200만원 당 1점		
		기차재 및 도서 증여				
	교외 봉사	언론매체 기고 및 출연	중앙방송 출연	5	동일내용을 여러 언론매체에 기고 및 출연 시 상위점수만 인정 최대 5점	
			지방방송 출연	3		
			중앙지 보도 및 컬럼게재	3		
			지방지 보도 및 컬럼게재	2		
			기타 보도 및 컬럼게재	1		
		학회 및 위원회 활동	학회 활동	5	전국학회 회장 5점 전국학회 부회장 및 편집위원장 3점 정부 및 공공기관 위원 2점 민간단체 위원 1점	
위원회 활동						
각종 평가활동		국가시험에 관한 사항	5	국가시험에 관한 사항 건당 2점 연구과제 및 학술지 논문심사 건당 1점		
		과제 및 논문 심사				
봉사활동		의료봉사 또는 사회단체 봉사	3	4시간당 1점 무보수에 한함		
수상 실적	교내외 수상 실적		5	총장표창 건당 4점 중앙정부기관 건당 4점 지방정부기관 및 공공단체 건당 2점 민간단체 건당 1점		
산학 협력	교육	취업지도	취업실적(정규직)	5	50% 기준으로 1% 상승시 0.1점	
		창업동아리 지도		2	건당 2점	
	봉사	장학금 유치	산업체 장학금 유치	5	200만원당 1점	
		산업체 교류	방문 특강	1	건당 0.5점	
			기타 산업체 지원활동	2		
	산업체위원	2				
	연구	특허	국제특허		건당 5점	
			국내특허		건당 3점	
		산업체 연구비 수주	인문사회		250만원당 1점	
		자연계		500만원당 1점		